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비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9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비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예비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안 제30조의3)

개정안은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⑥ ~ ⑫ (생략)	<u>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때에</u> <u>해당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u> <u>제공하여야 한다.</u> ⑥ ~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소견발표, 문자메시지 발송,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하되, 선거일 또는 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이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일에도 허용됨.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

구분	선거운동기간
선거공보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 선거일 전일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소견발표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 선거일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탁단체는 그러한 요청 시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또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가 휴대전화 가상전화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3일 이내에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위탁단체로부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제공하여야 함.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에 따른 과정>

후보자	⇒	위탁단체	⇒	관할위원회	⇒	이동통신사업자
		가상번호 제공요청		요청서 제출		요청서 심사 후 송부
후보자	⇐	위탁단체	⇐	관할위원회	⇐	이동통신사업자
		가상번호 제공		가상번호 제공		가상번호 제공
기간: 1. 위탁단체→관할위원회→이동통신사업자(3일 이내) 2. 이동통신사업자→관할위원회→위탁단체(7일 이내)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제

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위탁선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김제시산림조합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5일, 남울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는 8일,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는 8일 동안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위탁선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현황>

(2024. 12. 3. 기준)

단체명	구성원수 (가상번호요청자)	후보 자수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단체 신청	위원회→ 통신 사	통신 사→ 위원회	위원회→ 단체
김제시산림조합	1,649 (1,528)	2	7.30.~ 7.31.	8.1.~ 8.13.	8.5.	8.5.	8.9.	8.9.
남울진농업협동조합	2,933 (2,852)	2	10.1.~ 10.2.	10.3.~ 10.15.	10.1.	10.2.	10.8.	10.8.
순정축산업협동조합	2,247 (2,064)	5	11.12.~ 11.13.	11.14.~ 11.26.	11.13.	11.14.	11.19.	11.19.
영덕군산림조합	2,429 (2,058)	3	11.19.~ 11.20.	11.21.~ 12.3.	11.19.	11.19.	11.20.	11.2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예비후보자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① 위탁선거의 선거권자는 공공단체등의 회원으로 18세 이상이 선거권자인 공직선거에 비해 그 수가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기간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발송가능기간보다 짧아도 선거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②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 ③ 위탁선거에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도입 초기인 단계로 이동통신사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 위탁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와의 차이점, 이동통신사의 가상번호 신속 제공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주체에 예비후보자를 포함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임박하여 예비후보자가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한 때에 관할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바로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시 기한을 두는 등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